

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중 "공업경제국" 다음에 "문화관광국"을 신설한다.

제6조중 제10호 "문화예술 육성, 문화재 보존관리 및 체육진흥, 청소년 관련 업무"를 삭제하고, 같은 조 "제11호"를 "제10호"로 한다.

제10조중 제4호 "관광의 진흥"을 삭제한다.

"제11조 내지 제14조"를 "제12조 내지 제15조"로 하고,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(문화관광국) 문화관광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.

1. 문화예술의 육성
2. 문화재 보존관리
3. 체육진흥 및 청소년 관련업무
4.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조정
5. 관광지도 및 관광지개발업무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